

#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701
------------	-----

제출년월일 : '98. 10.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 □ 제정이유

- 수도법 제19조의2는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도출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제3조)
-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하도록 함 (제5조)
-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범위 안에서 안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의 지급(제8조)

## □ 참고사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없음
- 예산수반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 산출내역 :  $50,000\text{원} \times 10\text{인} \times 2\text{회} = 1,000,000\text{원}$
- 제정조례(안) : 불임
- 관계법령 : 불임
  - 수도법 제2조 및 제19조의2
  - 안산시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
- 입법예고사항 : '98. 8. 19. - 9. 7. ( 20일간)

##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도출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수돗물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결과통보 및 의견반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 관계법령 발췌서 ]

### 수도법 제19조의2의 1항 2항

제19조의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①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안산시 상수도의 수질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의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워너 임기 중 사망하였을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범위 안에서 안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